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0

발의연월일: 2020. 7. 2.

발 의 자: 송옥주・유동수・임종성

박용진 • 안호영 • 정춘숙

박 정ㆍ김영주ㆍ서삼석

정필모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급성심장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자가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 객차,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아, 청소년 등이 일상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가 높은 사업장이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의무구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교나 사업장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 음. 이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큰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의무구비 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같은 조 제4항 및 제62조제1항제3호의5 신설).

법률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 지
- 8.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9.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에 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	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	
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	
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	
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u>관광단지</u>
<u><신 설></u>	8.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u><신 설></u>	9.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u>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u>
<u>7.</u> (생 략)	<u>10.</u> (현행 제7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
	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
	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

④ (생략)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62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4. (생략) <신 설>

4. ~ 6. (생략)

② (생략)

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 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 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 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1. ~ 3의4. (현행과 같음)

3의5.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 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 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 착하지 아니한 자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